

의안번호	제 349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발 의 자	장병학 교육의원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(장병학 교육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
발 의 자 : 장병학 교육의원

최미애, 박상필, 이광희,

전용천, 최진섭, 하재성 의원

1. 제정이유

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(사립학교 포함) 교직원으로 함(안 제2조).
- 나. 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며, 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고,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.
- 다.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).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생략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

가) 기 간 : 2012.5.14. ~ 2012.6.3.(20일간)

나) 제출의견 : 없음

다) 반영여부 : 없음

(2) 규제사항 : 해당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'교육감'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(사립학교를 포함한다)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상담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.

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.

제3조(상담내용) 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.

제4조(상담방법)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·연락처·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.

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,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에게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.

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)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.

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

니 된다.

- 제6조(상담료)** ①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